

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

제정 2023. 7. 7
전부 개정 2024. 8.27

1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

- (1)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
- (2)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- (3)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
2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

- (1)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(2)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에 대한 총액과 증권에 대한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(3)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(4)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
- (5) 부동산(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임차권·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- (6)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
- (7)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(이하 “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은 정보

3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

- (1)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는 아래 각 호와 같으며 향후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다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는 각 본부장으로 한다.
 - 가. 경영관리본부 중 고유재산 운용담당 부문- 고유재산 투자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
 - 나. 투자본부 -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
 - 다. 기타 회사에서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담당부서

- (2)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.

4.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

- (1)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[별지 1]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(2)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,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,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5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

- (1)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허용 조건에 대한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거나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해상충 및 법령위반 가능성을 해소한 경우 거래할 수 있다.

가. 이해관계인의 거래. 단,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,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,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거래할 수 있다.

나.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

다. 집합투자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

라.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

(2)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: 준법감시인

8. 예외적 정보교류의 방법

(1)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[별지 3]의 예외적 정보제공 허용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.

가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
나.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사전 승인(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·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)을 받을 것

다.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

라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

마.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

바.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[별지 4]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제공 대장에 작성하여 금융투자업 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(5년) 이상 유지·관리할 것

(2)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(1)항에 따른 예외적 교류의 구체적 방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.

가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의 제공

나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에 대한 일시적 접근 권한 부여

다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으로의 기한을 정한 편입

9.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

(1) 회사는 임원(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, 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

지 아니한 부문(이하 “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”이라 한다) 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,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.

가. 대표이사

나. 준법감시인

다. 기타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문의 임원

- (2) 제(1)항에 따른 임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, 부당정보 이용금지,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3) 제(1)항에도 불구하고,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업무상 필요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임원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[별지 2] 회의록

결 재	작성자	담당 임원	준법감시인

작성자	소속: 직급: 성명:
일시	회의일자: 회의록 작성일자:
장소 또는 방식	
회의 주관부서	
참석자	소속: 직급: 성명:
회의명	
회의 목적	
회의 내용	

